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목진료 실태조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수목진료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목진료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명확화(안 제12조의6 및 별표 1)

- 나무의사 응시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범위를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하여 규정하고자 함

나. 나무병원 변경등록 대상의 명확화(안 제12조의9)

- 나무병원 등록기준에서 정한 기술인력 수를 초과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변경등록 대상임을 명시하고자 함

다. 수목진료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안 제34조)

- 수목진료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9월 ~ 10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9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나무병원의 기술인력(인원수가 변경되거나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이란 수목피해 진단·처방·치료와 관련된 자격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u>나무의사 등의 선임에 관한 사항</u>	제12조의9(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나무병원의 기술인력(인원수가 변경되거나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u>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생략)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u><신설></u> ⑥ (생략)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u>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연 락 처	(042) 481 - 4076